

200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년월일 : 2005. 12.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 이유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임.

2. 주요 골자

○ 2006년도 평창군공유재산취득·처분 총괄 내역은

- 취득이 총 12건으로 97,841m² 1,984백만원이고
- 처분이 총 3건으로 17,675m² 166백만원 임

○ 토지 매입은 8건 39필지 66,366m²인바 그 상세내역은

- 미탄면 창리 305번지의외 4필 16,176m²
공유재산집단화 부지
- 봉평면 창동리 산 119-2번지의외 4필 1,620m²
봉평관문 정비사업 부지
- 방림면 계촌리 1503-3번지 1,925m²
소방출장소 신축부지
-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의외 15필 32,783m²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부지
- 진부면 하진부리 322-1번지의외 6필 2,809m²
진부체육공원 인근부지
- 도암면 황계리 344-4번지의외 1필 7,844m²
처분 대체재산 취득 부지
- 도암면 황계리 275-23번지의외 1필 594m²
빗물펌프장 진입로 부지
- 도암면 황계리 344-48번지 2,615m²
올림픽 개최도시 경관불량정비사업 부지 등임.

○ 건물신축은 1건으로서

- 봉평면 창동리 345번지
봉평면 복지회관 피로연장 1동 600㎡임

○ 토지교환 취득 처분은 3건인데 취득이 3필 30,875㎡이고 처분이 5필 17,675㎡인바,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 평창군 선거관리위원회 신축부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부 하진부리 252번지 국유재산 1,420㎡를 취득하고
평창 중리 331-1번지의외 2필 727㎡를 처분함
- 군유림 집단화 사업의 일환으로
봉평 유포리 산 62번지 9,719㎡
방림 방림리 산785번지 19,736㎡ 등 사유림 2필을 취득하고
봉평 평촌리 산189번지 3,570㎡
봉평 유포리 산 2번지 13,378㎡등 군유림 2필을 처분함

3. 참고사항

-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조례

200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 토지취득			97,241	1,674,483			
매입			66,366	1,372,693			
1	임	창리305	936	411	상반기	군유재산집단화 부지	서원택
	전	창리319	2,083	18,788			조수현
	전	창리322	7,137	33,401			박명동
	전	창리324	4,374	20,470			김영종
	전	창리325	1,646	7,703			최재순
	소계		16,176	80,773			
2	도로	창동리산119-2	298	268	하반기	봉평관문정비 사업부지	장일영
	임	창동리산119-6	618	556			장일영
	임	평촌리산1-4	402	249			장일영
	전	평촌리583-1	287	258			권혁성
	전	평촌리583-12	15	13			권혁성
	소계		1,620	1,344			
3	전	계촌리1503-3	1,925	23,485	상반기	소방출장소 신축부지	원계숙
4	답	송정리2241-2	1,653	13,438	상반기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부지	박영철
	전	송정리2241-3	2,069	24,207			한상규
	답	송정리2241-4	8,164	93,886			한상규
	전	송정리2241-5	827	7,848			한상규
	답	송정리2241-6	1,937	17,123			박영철
	답	송정리2241-7	1,455	12,454			안희정
	답	송정리2241-8	1,481	12,040			안희정
	답	송정리2241-9	3,481	37,942			김원배
	전	송정리2241-10	1,917	19,553			김원배
	답	송정리2241-13	573	6,131			김원배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공시지가)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4	대	송정리2241-14	750	11,025	상반기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부지	한상규
	답	송정리2238	2,853	29,956			최명철
	답	송정리2239	344	3,956			한상규
	답	송정리2240	198	2,277			박영철
	답	송정리2259-1	4,245	44,572			박만철
	하천	송정리2390-1	836	1,814			건교부
	소계			32,783			338,222
5	잡	하진부리322-2	573	45,438	상반기	진부체육공원 인근부지	안상국
	잡	하진부리323	171	14,603			안상국
	잡	하진부리324-2	455	42,633			우강근
	잡	하진부리325-2	15	1,306			안상국
	잡	하진부리324-4	30	2,190			우강근
	잡	하진부리325	613	57,438			안상국
	잡	하진부리325-3	952	86,411			안상국
소계			2,809	250,019			
6	전	횡계리344-4	3,667	228,820	상반기	대체재산취득	김태현
	임	횡계리344-74	4,177	49,288			김태현
	소계			7,844			278,108
7	전	횡계리275-23	496	98,208	상반기	빗물펌프장 진입로부지	백수일
	전	횡계리276-46	98	9,654			백수일
	소계			594			107,862
8	전	횡계리344-48	2,615	292,880	상반기	올림픽개최도시 경관불량정비사업	강원도
○ 건축물 취득			600	310,500			
신.증축			600	310,500			
1	철콘	창동리345	600	310,500	상반기	복지회관피로연장 신축	
○ 토지교환 취득			30,875	301,790			
1	전	하진부리252	1,420	293,940	상반기	선관위교환부지	재경부
2	임	유포리 산62	9,719	3,528	상반기	군유림집단화	김덕기
3	임	방림리 산785	19,736	4,322	상반기	군유림집단화	최현광

200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표시			매각대상 수 량	과표 또는 평 가 액	매 각 사 유	취 득 희망자
	지목	소재지	지적				
○ 토지교환 처분			17,675	17,675	166,681		
1	대	중리331-1	488	488	102,480	선거관리위교환부지	선관위
	대	중리331-3	84	84	17,640		
	대	중리333-1	155	155	39,370		
	소계			727	727	159,490	
2	임	평촌리 산189	3,570	3,570	1,599	군유림 집단화	김덕기
3	임	유포리 산2	13,378	13,378	5,592	군유림 집단화	최현광

附 表

- 지 적 도
- 토지대장열람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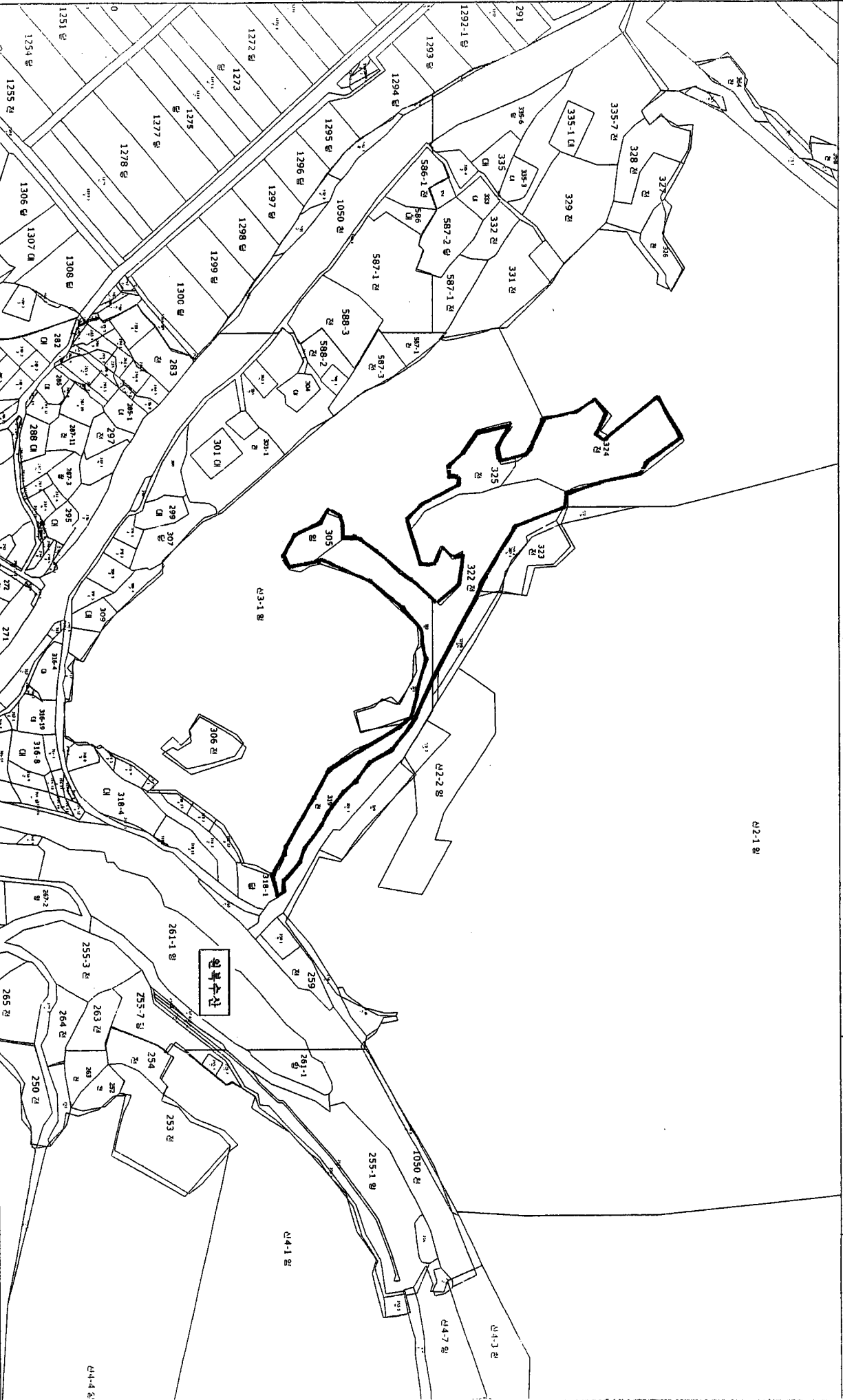
목 차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사 업 명	페이지
1	미탄면 창리 305 외	군유재산집단화 부지	1
2	봉평면 창동리 산119-2 외	봉평 관문정비사업 부지	2
3	방림면 계촌리 1503-3	방림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3
4	진부면 송정리 2241-2 외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부지	4
5	진부면 하진부리 322-2 외	진부체육공원 인근부지	5
6	도암면 횡계리 344-4 외	대체재산취득 부지	6
7	도암면 횡계리 275-23 외	빗물펌프장 진입로 부지	7
8	도암면 횡계리 344-48	올림픽개최도시경관불량정비사업부지	8
9	진부면 하진부리 252	선관위 교환 부지	9
10	봉평면 유포리 산62	군유림집단화 부지	10
11	방림면 방림리 산785	군유림집단화 부지	11
12	평창읍 중리 331-1 외	선관위 교환 부지	12
13	봉평면 평촌리 산189	군유림집단화 교환 부지	13
14	봉평면 유포리 산2	군유림집단화 교환 부지	14
15	토지대장열람조서		15~16
16	관계법령		17~18

평창군 미탄면 창리 305번지의 4필
 (군유재산집단화부지)

축척

1:3601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503-3번지
(방림소방파출소신축부지)

축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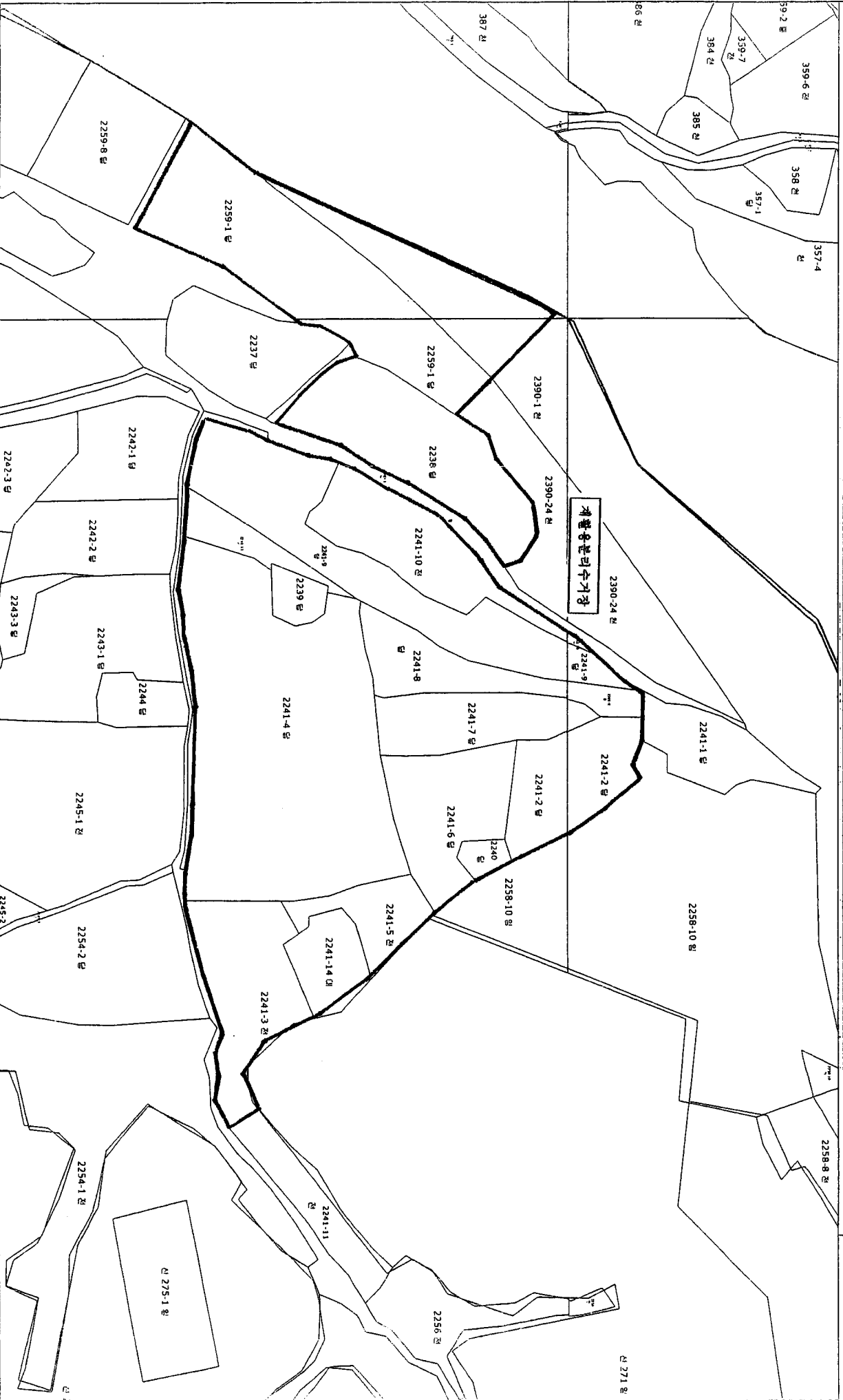
1:2071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2번지의 15필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부지)

축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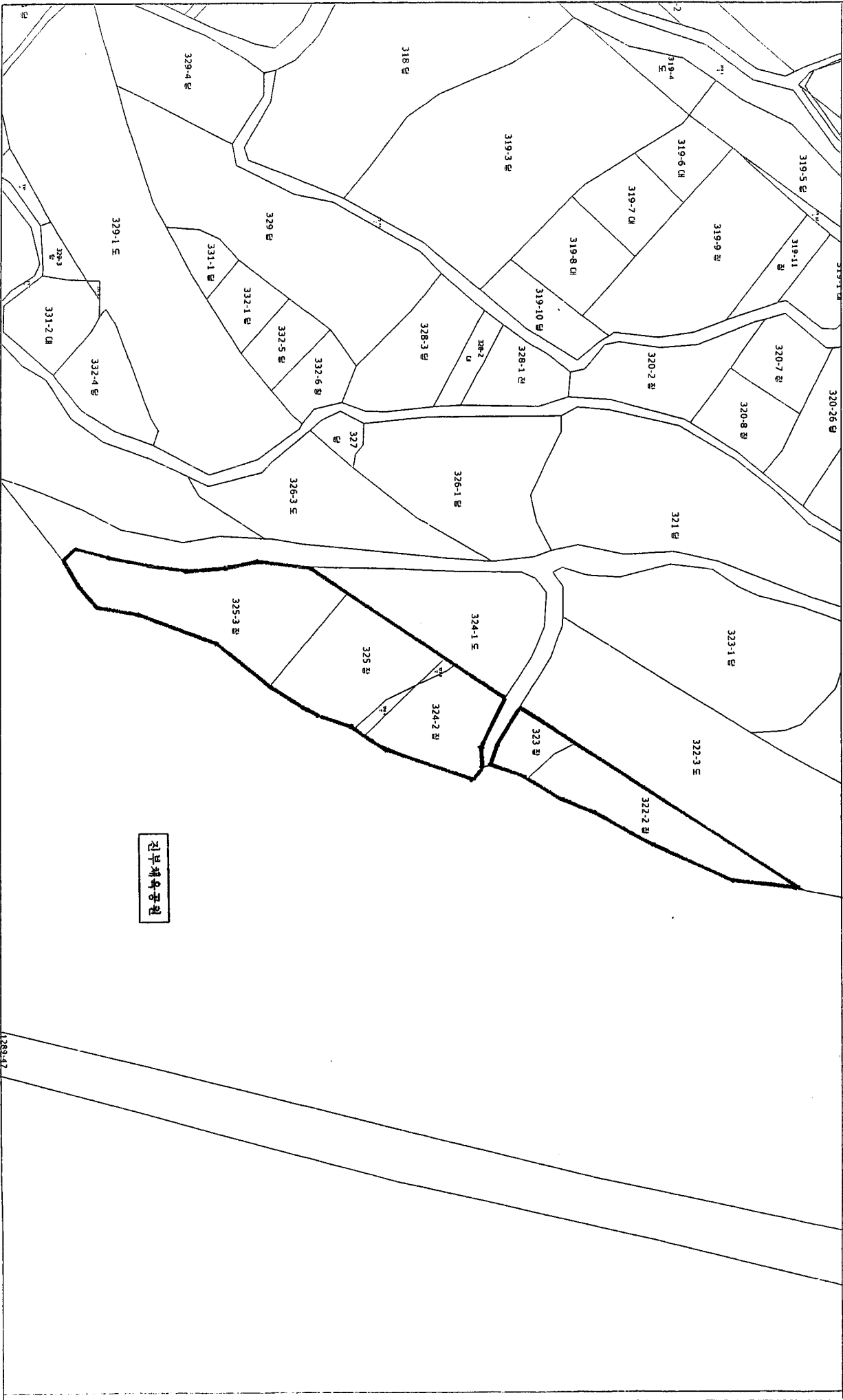
1:1893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322-2번지의 6필
(진부체육공원 인근부지)

축척

1:1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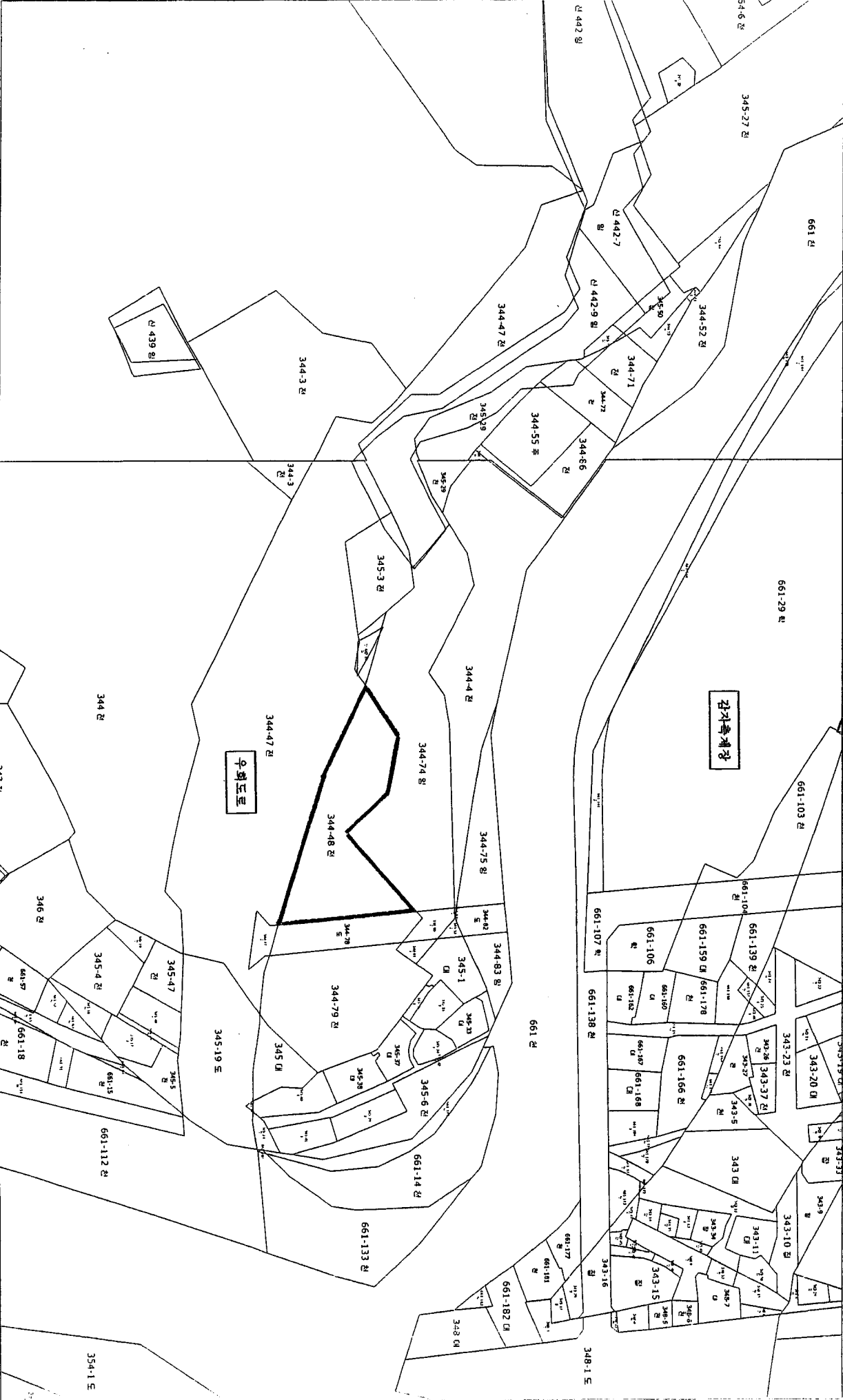


1289-47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344-48번지
(을림픽개최도시경관블랑정비사업)

축척

1:2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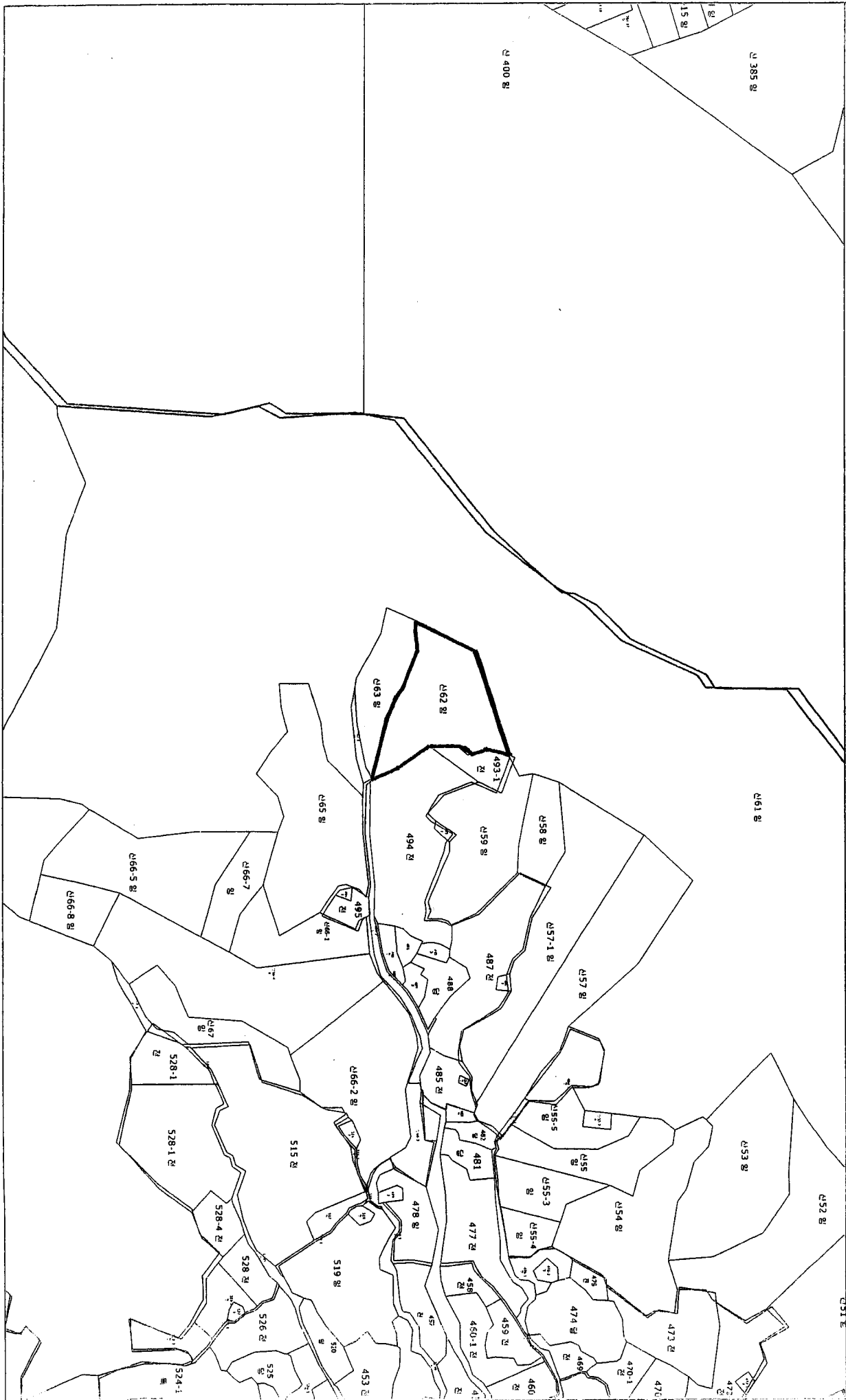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산62번지 (군유림 집단화부지)

축척

1:4729

C SITE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785번지 (군유림 집단 회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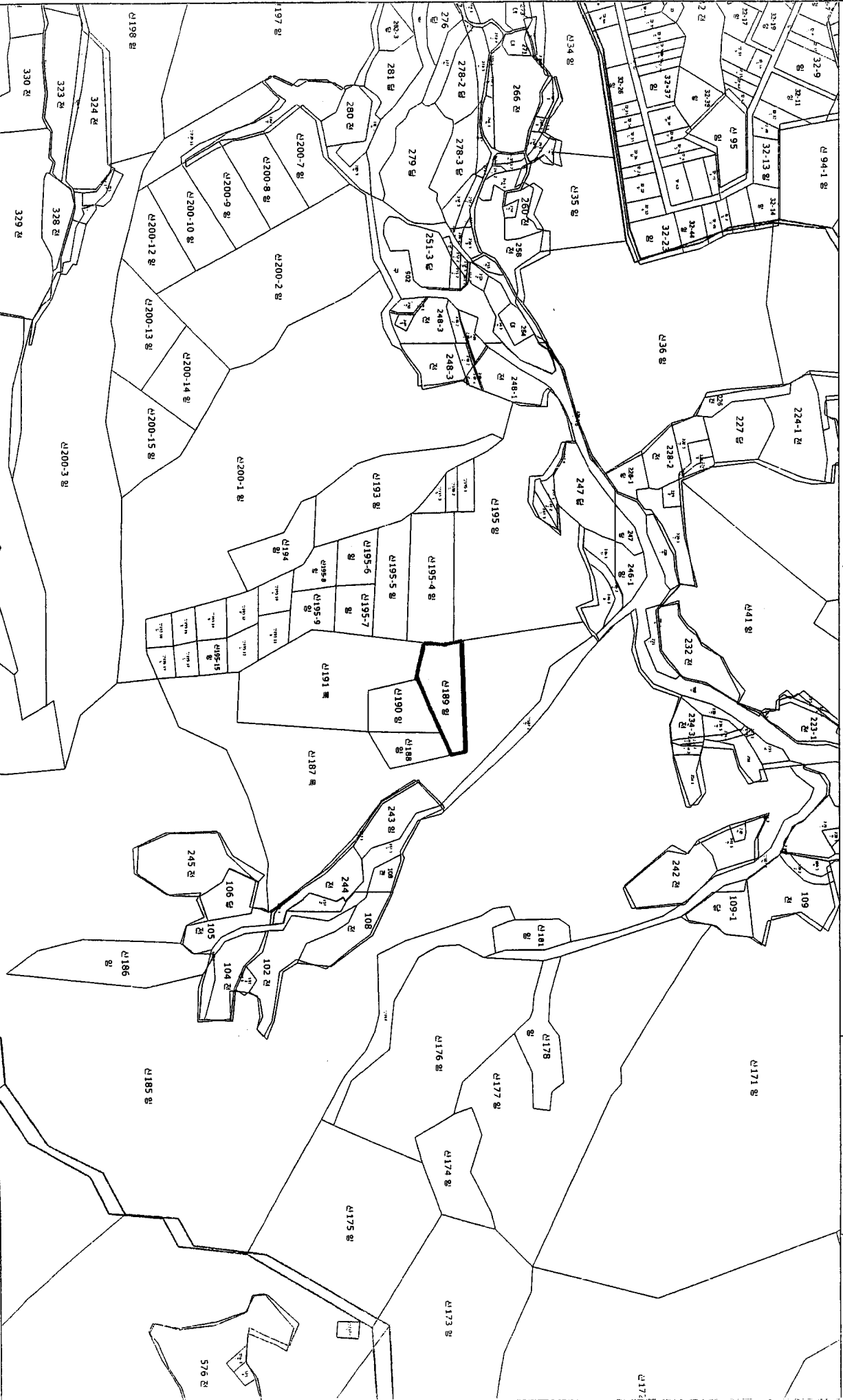


축척
1:49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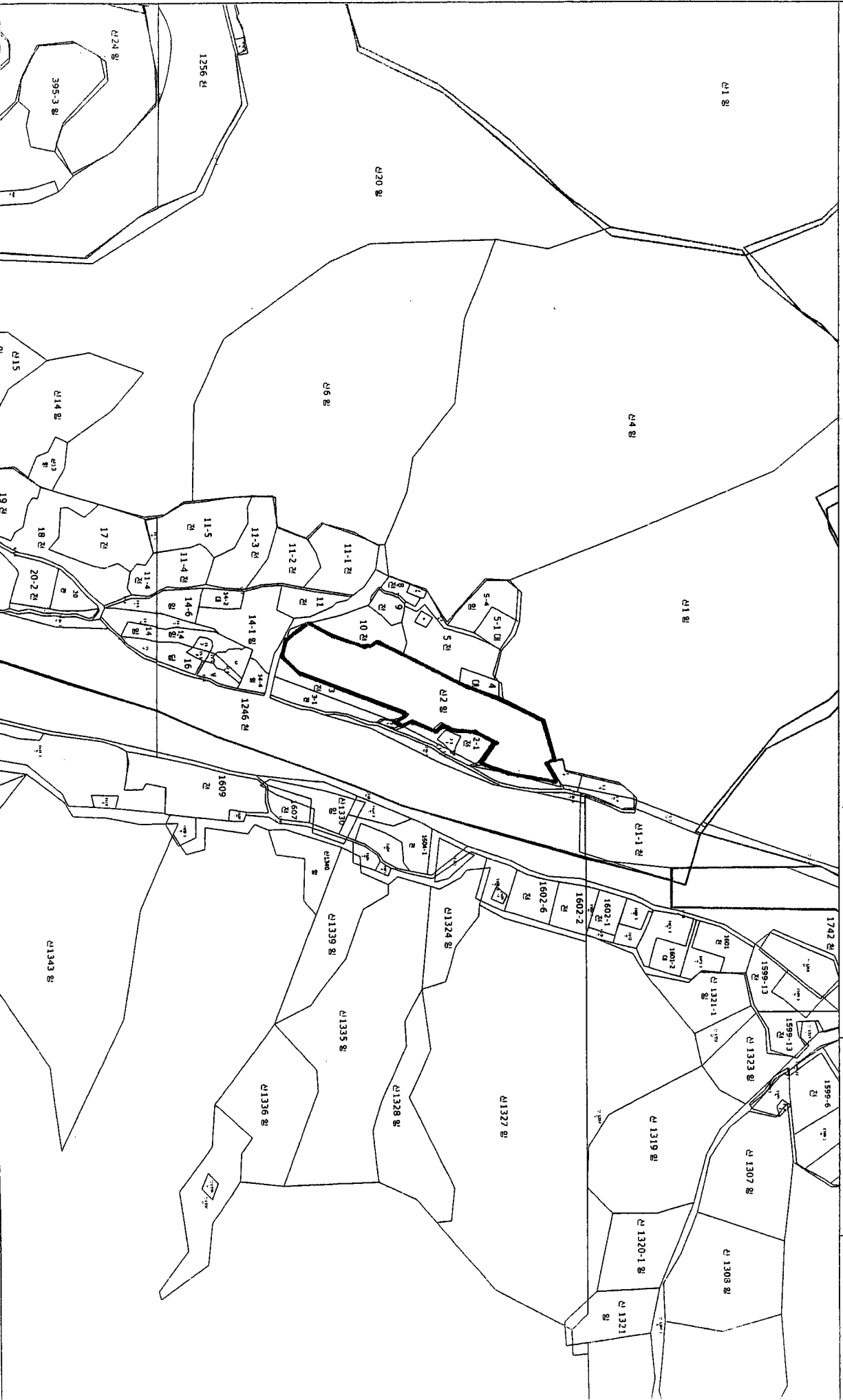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산189번지 (군유림집단화교환부지)

축척

1:4685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 산2번지 (군유림집단화교환부지)



축척

1:4827

토지대장열람조서

(단위 : m², 천원)

인원 번호	토지소재		토지표시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성명	
○ 토지취득							
매입							
1	미탄면 창리	305	임	936	창리 287-3	서원택	군유재산집단화 부지
	미탄면 창리	319	전	2,083	창리 308-2	조수현	
	미탄면 창리	322	전	7,137	미상번지	박명동	
	미탄면 창리	324	전	4,374	창리 295	김영종	
	미탄면 창리	325	전	1,646	경기 용인시 구성읍 창덕리 37	최재순	
2	봉평면 창동리	산119-2	도로	298	창동리 281	장일영	봉평관문정비 사업부지
	봉평면 창동리	산119-6	임	618	창동리 281	장일영	
	봉평면 평촌리	산1-4	임	402	창동리 281	장일영	
	봉평면 평촌리	583-1	전	287	평창읍 하리 410-14	권혁성	
	봉평면 평촌리	583-12	전	15	평창읍 하리 410-14	권혁성	
3	방림면 계촌리	1503-3	전	1,925	계촌리 1434-17	원계숙	소방출장소 신축부지
4	진부면 송정리	2241-2	답	1,653	송정리 2222	박영철	우수한약유통지원 시설부지
	진부면 송정리	2241-3	전	2,069	송정리 2241-5	한상규	
	진부면 송정리	2241-4	답	8,164	송정리 2241-5	한상규	
	진부면 송정리	2241-5	전	827	송정리 2241-5	한상규	
	진부면 송정리	2241-6	답	1,937	송정리 2222	박영철	
	진부면 송정리	2241-7	답	1,455	하진부리 250	안희정	
	진부면 송정리	2241-8	답	1,481	하진부리 250	안희정	
	진부면 송정리	2241-9	답	3,481	하진부리 288	김원배	
	진부면 송정리	2241-10	전	1,917	하진부리 2588	김원배	
	진부면 송정리	2241-13	답	573	하진부리 288	김원배	
	진부면 송정리	2241-14	대	750	송정리 2241-5	한상규	
	진부면 송정리	2238	답	2,853	하진부리 254	최명철	
	진부면 송정리	2239	답	344	송정리 2241-5	한상규	
	진부면 송정리	2240	답	198	송정리 2222	박영철	
	진부면 송정리	2259-1	답	4,245	송정리 1577	박만철	
진부면 송정리	2390-1	하천	836		건교부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토 지 표 시		소 유 자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 소	성 명	
5	진부면 하진부리	322-2	잡	573	하진부리 126	안상국	진부 체육공원 인근부지
	진부면 하진부리	323	잡	171	하진부리 126	안상국	
	진부면 하진부리	324-2	잡	455	송정리 2537 석미아파트 102-	우강근	
	진부면 하진부리	325-2	잡	15	하진부리 126	안상국	
	진부면 하진부리	324-4	잡	30	송정리 2537 석미아파트 102-	우강근	
	진부면 하진부리	325	잡	613	하진부리 126	안상국	
	진부면 하진부리	325-3	잡	952	하진부리 126	안상국	
6	도암면 황계리	344-4	전	3,667	황계리 343 대관주택 나-201	김태현	대체재산취득
	도암면 황계리	344-74	임	4,177	황계리 343 대관주택 나-201	김태현	
7	도암면 황계리	275-23	전	496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5-25 일신아파트 2-301	백수일	빗물펌프장 진입로부지
	도암면 황계리	276-46	전	98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5-25 일신아파트 2-301	백수일	
8	도암면 황계리	344-48	전	2,615		강원도	울림픽개최도시 경관불량정비사업
교환							
1	진부면 하진부리	252	전	1,420		재경부	선관위교환부지
2	봉평면 유포리	산62	임	9,719	창동리 260	김덕기	군유림집단화
3	방림면 방림리	산785	임	19,736	대화리 1001	최현광	군유림집단화
○ 토지처분							
교환							
1	평창읍 중리	331-1	대	488		선관위	선거관리위 교환부지
	평창읍 중리	331-3	대	84			
	평창읍 중리	333-1	대	155			
2	봉평면 평촌리	산189	임	3,570		평창군	군유림 교환부지
3	봉평면 유포리	산2	임	13,378		평창군	군유림 교환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처분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토지대장 열람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5. 12.

재 무 과 재산관리담당 김택용 (인)

관 계 법 령

지 방 재 정 법

-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일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
-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 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손실보상 또는 환매

5. 삭제 <2002.11.29>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양여
7.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 용지 매각
8.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1. 지방세법에 의한 몰납
1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4.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퍼센트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
1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미리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재산의 취득·처분
16.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조건에 의하여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